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39

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 박주민·채현일·이강일

김영환 · 김남근 · 이해식

강선우 · 김남희 · 김태선

전현희 · 김우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·보존을 위하여 열람·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.

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 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·의결하도록 함(제20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의 제목 및 제2항 전단 중 "궐위"를 각각 "사고 또는 궐위"로 한다.

제4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3(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) ①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(이하 "특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9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회 의장, 대법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 관련 학회가 각각 3 명의 위원을 추천한다.
-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특별위원회의 심의 · 의결 내용은 공개한다.
- ⑥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20조의2(대통령 궐위 시 대통 제20조의2(대통령 사고 또는 궐 령기록물 관리) ① (생 략) 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 (2) -----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 ----사고 또는 궐위-----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 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기 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. <신 설> 제20조의3(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 원회) ①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통령지 정기록물의 지정과 해제에 관 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 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(이하 "특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9명 위원으로 구성하

- 면 국회의장, 대법원장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 관련 학회가 각각 3명의 위원을 추 천한다.
-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특별위원회의 심의·의결 내용은 공개한다.
- ⑥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